

<p>제2019-163호 2019년 8월 30일(금)</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9-26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9-26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7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9-2048호 도로지정공고[화정면 백야리 산 292-1번지] 8
- 여수시 공고 제2019-2070호 도로지정공고(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320-13/(주)에스앤*) 9
- 여수시 공고 제2019-2071호 도로지정공고(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320-13/(주)리포*) 10
- 여수시 공고 제2019-2106호 도로지정 공고(화양면 나진리 339-4외) 11
- 여수시 공고 제2019-2134호 (입법예고)여수시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12

회 람								
--------	--	--	--	--	--	--	--	--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변경 신고 처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8. 30.

여 수 시 장

1. 사업명 : 여수시 관문동 8-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 골드종합건설(주)
3. 사업위치 : 여수시 관문동 8-7번지 외 16필지
4. 사업개요
 - 가. 대지면적 : 18,480.1m²
 - 나. 건축면적 : 8,385.5155m²
 - 다. 연 면 적 : 44,109.6345m²
 - 라. 규 모 : 지하1층·지상18층, 주5동/부9동, 286세대
 - 마.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지면적	18,452m ²	18,480.1m ²
건축면적	8,363.3254m ²	8,385.5155m ²
연 면 적	44,117.2825m ²	44,109.6345m ²
건 폐 율	45.32%	45.38%
용 적 률	172.73%	172.43%

5. 사업기간 : 2016. 10. ~ 2019. 08.

6. 주택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여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붙임 1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659-4098)에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관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여수시 관문동 8-7번지 일원	19,632	증)117.3	19,749.3	여수시 고시 제2016-223호 (2016.08.1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	1	여수시 관문동 8-7번지 일원	19,749.3	• 지적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경계 및 변적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9,632	증)117.3	19,749.3	100.0	
주 거 지 역	19,031	증)117.3	19,148.3	97.0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31	증)117.3	19,148.3	97.0	
상 업 지 역	601	-	601.0	3.0	중로2-20호선
일 반 상 업 지 역	601	-	601.0	3.0	

나.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다. (1) 교통시설

라.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0	16	보조 간선 도로	77	대3-1 관문동 805-2도	관문동 719도	일반 도로	-	전고-98호 87.06.13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마.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A-1	A-1	18,452	18,480.1	여수시 관문동 8-7번지 일원	18,452	증)28.1	18,480.1	

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사.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여수시 관문동 8-7번지 일원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제13호 부대시설, 제14호 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6%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18층 이하		
		배 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향 배치		
		형 태	• 지붕 :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심미성 증진을 위하여 조형적 형태의 지붕 권장 •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투시형 담장 및 조경 담장 계획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계획 이외의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의 승인내용을 준수

여수시 고시 제2019 - 26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허가(승인) 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16-48 (*16.6.14)	여수시 시청로1 (학동)	여수시장 (관광과)	여수시 율촌면 반월리 463-1번지 일원	2,190	2019. 8. 30.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사업(반월~복촌)

2019. 8. 30.

여 수 시 장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산 292-1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화정면 백야리 산 292-1번지	22	4	90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8. 30.

여 수 시 장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320-13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65	6	392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돌산읍 우두리	산320-13	65	6	392	“	(주)에 스앤 *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8. 30.

여 수 시 장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 320-13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170	6	1,028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돌산읍 우두리	산 320-13	170	6	1,028	“	(주)리 포*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8. 30.

여 수 시 장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339-4, 화동리 산27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지정(변경)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계	81	6	491		
화양면 나진리 339-4	25	6	151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화양면 화동리 산27	56	6	340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8. 30.

여 수 시 장

공 고

여수시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30.

여 수 시 장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시 거주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문화적·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의 문화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희망바우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등의 정의

○ 희망바우처 지원 대상자 및 금액 등(안 제3조 ~ 제4조)

- 희망바우처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 시장은 신청에 따라 카드 발급할 수 있는 규정

○ 희망바우처 신청 및 발급, 사용(안 제5조 ~ 제9조)

-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지정된 희망바우처 카드 사용 장소의 공개 규정

○ 요금의 정산 및 발급대상 관리·시스템 운영(안 제10조 ~ 제11조)

- 요금의 정산은 위탁 받은 자와 체결한 계약서로 정함
- 발급대상자는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며, 카드 시스템 운영의 위탁 규정

○ 사무의 위임 규정(안 제12조)

○ 부 칙: 시행일

3. 입법예고기간 : 2019. 8. 30.~9. 18.(20일간)

4. 조례 제정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00(학동), 문화예술과
- 연락처 및 담당자 : 여수시장(문화예술과장)
- 전 화 : 061-659-4739 / 팩 스 : 061-659-5855
- 이 메 일 : sjsbala@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바우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희망바우처”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의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희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국적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북한이탈주민 중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중 만 5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발급대상자 중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 금액) 제3조에 따른 발급대상자에게는 연 8만원 상당의 희망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희망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급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1. 발급대상자 본인
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희망바우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바우처 발급신청서
2.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3.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1년 이상 여수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이력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법정대리인 또는 소속 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6.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5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6조(희망바우처 발급) 시장은 희망바우처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대상자에게 희망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사용중지)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가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희망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장소 지정 등) ①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처를 관

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희망바우처 카드 사용 장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사용기한) 희망바우처 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대상자의 문화 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시장은 희망바우처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희망바우처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희망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대상자들이 체험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체험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임) 제5조·제6조·제10조의 희망바우처 카드 발급과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발급대상자 (대상 자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신청내용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분실 [] 훼손 [] 그 외)
------	------	--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신청인 구분	[] 발급대상자 [] 법정대리인 [] 시설대표자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여수시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험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위 신청대상자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인)

비 고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란	①주민등록초본 확인 [] ②카드 등록 [] ③카드 지급번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여수시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재)발급 위임장
(발급대상자,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발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수임자 (대리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여수시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발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법정대리인(또는 시설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